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운영실적이 저조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률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 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6. ~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을 “종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을 “종합하여”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령안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u>종합하여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u>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 <u>종합하여</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u>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 ----- ----- <u>종합하여</u> ----- -----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세청 및 조달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의 회장

2.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삭 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